노원구보

노원구 홈페이지 | www.nowon.kr

제2350호 2026. 10. 27.(화)



노원구 전경

※ 노원구보 게재를 의뢰하는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.
◎ 구보의 게재내용은 발행당일 노원구 홈페이지 게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http://www.nowon.kr (노원소개→알림마당→노원구보)>
◎ 구보 발행일은 매주 목요일이며, 공휴일일 때에는 다음날 발행합니다.
◎ 구보는 서울특별시노원구구보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발행일 3일전까지 접수합니다.
◎ 구보 게재의뢰 및 편집 문의 TEL. 2116-3414
※ 구보게재일자가 문서시행일이니,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,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.

서울특별시 노원구

발행인 : 노 원 구 청 장
편집인 : 미디어홍보담당관 정 윤 경
전 화 : 02-2116-3414

차 례

공 고

○ 제2026-1771호 행위허가 제한(안) 공람공고 ····· 3

공 고

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-1771호

행위허가 제한(안) 공람공고

1. 서울특별시 노원구 내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(예정) 중인 아래 구역에 대한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행위허가 제한(안)과 관련하여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·공고합니다.

2. 본 행위허가 제한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기간 이내에 노원구청 재건축사업과(서면) 또는 서울도시공간포털(온라인)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2026년 10월 27일

노 원 구 청 장

가. 공람기간 및 의견제출 기한 : 2026.10.27.(화) ~ 2026.11.10.(화)

나. 공람장소 : 노원구청 3층 재건축사업과(☎02-2116-3914)

다. 의견제출 :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기간 내 서면(노원구청 3층 재건축사업과) 또는 온라인(서울도시공간포털[https://urban.seoul.go.kr]) 제출

라. 행위허가의 제한내용

1) 제한 대상지역

연번	구 역 명	위 치	면적(㎡)	행위허가 제한기간	비고
1	**상계주공10단지**	상계8동 666번지 일원	122,646	고시일로부터 3년간 (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다음 날 행위제한 자동해제)	신규
2	**상계주공14단지**	상계9동 626번지 일원	117,888		
3	**상계주공1단지**	상계6·7동 767-1번지 일원	92,772.6		

2) 제한사유

○ 노원구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예정 또는 정비계획 수립 중인 구역에 대하여 비경제적인 건축 및 투기 수요 유입을 방지하고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계획적인 도시관리를 도모하기 위함.

3) 제한근거 :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

4) 행위허가 제한대상

○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9조제7항제1호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

○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9조제7항제2호에 의한 토지의 분할

○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9조제7항제3호에 의한 「건축법」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일반건축물대장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

○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9조제7항제4호에 의한 「건축법」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 분할

5) 제한 예외대상 : 제한대상에도 불구하고 기존건축물의 이용편의 등을 위하여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

6) 제한기간 : 행위허가 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 (단, 제한기간 이내라도 정비구역이 지정·고시된 경우, 고시일 다음 날에 자동해제됨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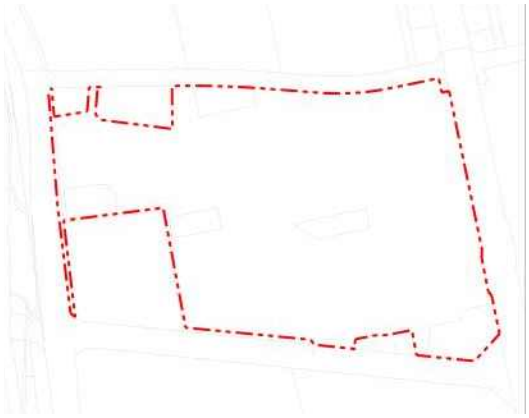
마.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 참조

붙임 1 행위허가 제한 대상지 위치도

▌대상지 현황

1. 상계주공10단지

위 치 도



2. 상계주공14단지

위 치 도



3. 상계주공1단지

위 치 도

